

의안번호	제 324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409회)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용규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4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박용규·김현문·이정범  
박병천·박재주·유상용  
이욱희·김꽃임 의원

## 1. 제안 이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우선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변경  
(안 제1조)

나. 기관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3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적경제기업”을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제8조 중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경우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한다”를 “하며, 도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u>사회적경제기업</u>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우선구매) 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u>경우에</u>는 <u>사회적경제기업</u>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 <u>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u>----- ----- -----.</p> <p>제8조(우선구매) ----- ----- <u>경우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범위에서</u> <u>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도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 관계 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27.>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2021. 7. 27.>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2021. 7. 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2. 2. 1.]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0. 31.] [충청북도조례 제3710호, 2014.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80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1. ~ 8의2. (생략)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 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7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 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12. 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재화, 용역 등 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의 조례로, 우선 구매 등에 대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있어 비용을 산출할 수 없음